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등기신청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 적용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등 4종의 서식을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으로, “제12조제8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조제4항제1호”를 “법 제2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생활보호법 제3조”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로, “보호대상자”를 “과태료 감경 대상자”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반행위의 조사 · 확인)”을 “(부동산등기신청해태 사실 조사서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를 “과태료 부과”로, “조사 · 확인하는 때에는 검인된 계약서 · 등기필통지서등 관계서류를 조사하는 등 등기신청해태 사실의 여부를 조사 · 확인하고”를 “조사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부과등)”을 “(과태료 처분 통지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성명·주소·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관리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과태료 처분 통지 : 별지 제3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 처분 통지서
2.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처리사항 기록·관리 :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 처리부

제8조 중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과태료 처분”으로, “과태료처분에 대한”을 “과태료 처분에 대한”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리부”는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 처리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제3조제1항 관련)

부과기준	부과금액
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부동산등기신청해태 사실 조사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해태 사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조사 하였습니다.

목적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건물구조	
	면적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계약금액)	
등기권리자	성명 (법인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등기의무자	성명 (법인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사실조사 결과	계약일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 (계약효력발생일)	
	등기신청일		위반사항 발생일	
	위반 내용			
	해태 기간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5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해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자	성명 (법인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목적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지목		면적	
소유권 이전 및 위반사항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 (계약효력발생일)		등기신청일	
	위반 근거법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 제2조	위반사항 발생일	
	위반 내용			
	해태 기간			
과태료 금액	금액			
	산출 기초			

붙임 과태료 고지서 1부. 끝.

발신명 외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 처분 통지서

- 귀하께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위반하였기에 별지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자	성명 (법인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목적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지목		면적	
소유권 이전 및 위반사항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 (계약효력발생일)		등기신청일	
	위반사항 발생일		해태기간	
과태료 금액	금액			
	산출 기초			

붙임 과태료 고지서 1부. 끝.

발신명 외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 납부 독촉

귀하께서는 부동산등기신청해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독촉번호			납부기한	
과태료 납부 의무자	성명 (법인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목적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지목		면적	
과태료 금액	금액			
	산출 기초			

붙임 과태료 독촉 고지서 1부.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u>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제12조제1항----- ----- ----- -----.		
제3조 (부과기준 및 감경) ① (생략) ②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법 제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생략)		제3조 (부과기준 및 감경)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 1. 법 제2조제5항제1호----- ----- -----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과태료 감경 대상자----- 제5항----- ----- -----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4조 (<u>위반행위의 조사·확인</u>)		제4조 (<u>부동산등기신청해태 사실</u>)		

시장등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를 위한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는 때에는 검인된 계약서·등기필통지서등 관계서류를 조사하는 등 등기신청해태사실의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부과등) ① 시장등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15일이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처분대상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2. ~ 8. (생략)

②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처리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조사서 작성) -----

----- 과태료 부과-----

----- 조사하는 때에는 --

-----.

제6조 (과태료 처분 통지서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 성명·주소·생년월일

2. ~ 8. (현행과 같음)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관리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과태료 처분 통지 : 별지 제3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

<u>한다.</u> 제8조 (이의신청) <u>법 제12조제4항</u> <u>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u> <u>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u> <u>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u> <u>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u> <u>에 의한다.</u> 제10조 (체납처분) <u>시장등은 제9</u> <u>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u> <u>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u> <u>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u> <u>한 때에는 법 제12조제6항의 규</u> <u>정에 의하여 체납처분한다.</u> 제11조 (준용규정) <u>과태료의 징수</u> <u>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u> <u>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u> <u>의한다.</u>	<u>과태료 처분 통지서</u> 2. <u>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u> <u>제반처리사항 기록·관리 : 별</u> <u>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u> <u>청해태 과태료 처리부</u> 제8조 (이의신청) <u>과태료 처분</u>--- ----- ----- ----- <u>과태료 처분에 대한</u> ----- -----. <u><삭 제></u> <u><삭 제></u>
--	--